

학교법인 삼육학원

2022년도 2월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2년 2월 17일 오전 10:00 ~ 오전 11:00(회의소 집 정보일 : 2022년 2월 8일)

2. 장 소 : 원격영상회의

3. 출결사항

구 분	정 수	재 적	참 석	참 석 임 원	결석임원	비 고
이 사	15명	15명	14명	강순기 김은자 김삼배 김일목 남시창 박두한 박정택 박종규 엄덕현 장원관 전광진 정근태 조영욱 최승호	정원식	
감 사	2명	2명	1명	이승희	은기호	

4. 안 건 :

- | | |
|--------------------------|---------------------------|
| (1) 교직원 인사안 | (2)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 (3) 법인정관 개정안 | (4) 2022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보수규정안 |
| (5) 삼육대학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안 | (6) 간서명 임원 선임안 |

5. 회의내용 : 이사장 강순기 목사님 의장석에 등단하고 성원보고에 이어 인사 말씀이 있었고 (인사말씀 생략) 부의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다.(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1) 교직원 인사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법인산하 각급학교의 2022학년도를 위한 교직원 인사안으로 별지 1과 같습니다. 간사의 설명과 같이 해당학교의 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의 제청으로 제안된 별지 1의 교직원 인사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자이사 : 동의합니다.

조영욱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교직원 인사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법인산하 각급학교의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학부모부담수입감소 및 교육비특별회계증감 등의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별지 2의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정택이사 : 동의합니다.

엄덕현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2의 2021학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서명	박종규	[서명]	[서명]
-----	-----	------	------

(3) 법인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간사의 설명과 같이 법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 및 신설이 있어 이를 법인정관에 반영하였고, 삼육대학교와 삼육보건대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의 조직 변경 있어 이를 법인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별지 3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남시창이사 : 동의합니다.

김삼배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4의 법인정관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보수규정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2022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보수규정안입니다. 별지 4를 참고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규이사 : 동의합니다.

박두한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4의 2022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보수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육대학교 SU-Glory 2030 중장기 발전계획안

이 사 장 : (간사의 의안설명 생략) 다음은 삼육대학교의 요청으로 삼육대학교 SU-Glory 2030 발전계획안입니다. 별지 4를 참고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진이사 : 동의합니다.

장원관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별지 5의 삼육대학교 SU-Glory 2030 발전계획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간서명 임원 선임안

이 사 장 : 이제 간서명 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태이사 : 김은자, 박종규, 최승호이사를 추천하며 동의합니다.

김일목이사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의견 없음) 그럼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찬성:14명, 반대:0명) 감사합니다. 모두 거수로 찬성하셨으므로 간서명 임원으로 김은자, 박종규, 최승호이사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간서명	박종규	최승호	김은자
-----	-----	-----	-----

◆참 석 이 사 :

이사장

강 순 기

이 사

정 승 인

이 사

김 하 배

이 사

김 은 차

이 사

백 정 택

이 사

백 종 규

이 사

광 시 광

이 사

백 우 권

이 사

전 의 자

이 사

김 은 복

이 사

김 은 배

이 사

김 려 권

이 사

정 우 채

이 사

이 사

조 영 우

감 사

이 성 희

감 사

간서명

백 종 규

정 승 인

정 우 채

별지1. 교직원 인사안

1. 삼육대학교 인사

가. 전임교원 신규채용

천지영	간호학과 조교수-정년트랙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조덕현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특성화트랙(교육중심)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전세진	바이오융합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연구중심)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김기범	화학생명과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연구중심)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강주영	글로벌한국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강의중심)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안재순	상담심리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연구중심)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김민희	영어영문학과 조교수-특성화트랙(연구중심)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이금선	SW국고사업단 부교수-SW국고사업 특성화트랙(강의중심) 교원	2022.03.01.~2026.02.28.
장윤재	SW국고사업단 조교수-SW국고사업 특성화트랙(강의중심) 교원	2022.03.01.~2024.02.29.
이새봄	SW국고사업단 조교수-SW국고사업 특성화트랙(강의중심) 교원	2022.03.01.~2024.02.29.
김영화	대학원통합예술학과 조교수-외국인트랙(전공강의) 전임교원	2022.03.01.~2024.02.29.

나. 퇴직

오덕신	지능정보융합학부 교수(정년퇴직)	2022.02.28.
유구용	화학생명과학과 교수(정년퇴직)	2022.02.28.
주미경	아트앤디자인학과 교수(정년퇴직)	2022.02.28.
박의진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오시진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Robert Clive Mc Leod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이건호	스미스학부대학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이금선	상담심리학과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천지영	간호학과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다. 휴직

정성진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질병휴직	2022.03.01.~2022.08.31.
-----	------------	------	-------------------------

라. 직원 퇴직

강성현	대학원 교학팀(의원면직)	2022.03.01.
-----	---------------	-------------

마. 직원채용

유혜은(기술직8급)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	2022.03.01.
------------	-------------	-------------

바. 직원 승진

유민경(일반직7급)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2022.03.01.
이보람(일반직7급)	대학혁신지원사업단	2022.03.01.
왕의진(기능직6급)	사무처 시설관리팀(기관)	2022.03.01.

간서명	박종규	최승리	김민희
-----	-----	-----	-----

사. 직종전환

권현섭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기능직 8급에서 기술직 8급으로	2022.03.01.
최환철	사무처 시설관리팀 기능직 6급에서 일반직 6급으로	2022.03.01.

2. 삼육보건대학교 인사

가. 전임교원 신규채용

구창규	전인교육원 조교수-비정년트랙 교육전담교수	2022.03.01.~2024.02.29.
윤성철	전인교육원 조교수-비정년트랙 교육전담교수	2022.03.01.~2024.02.29.
정태원	전인교육원 조교수-비정년트랙 교육전담교수	2022.03.01.~2024.02.29.
최충호	전인교육원 조교수-비정년트랙 교육전담교수	2022.03.01.~2024.02.29.

나. 퇴직

오신영	치위생과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이기곤	간호학과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조진호	아동보육과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최규문	뷰티융합과 조교수(의원면직)	2022.03.01.

다. 직원 채용

장민수(연봉제)	산학협력단	2022.03.01.
----------	-------	-------------

라. 직원 정규직(연봉제) 전환

전경민(정규직연봉제)	평생교육원	2022.03.01.
-------------	-------	-------------

마. 직원 승급

이은미	교무입학처	기술직 6급에서 기술직 5급으로	2022.03.01.
이형진	혁신기획처	일반직 7급에서 일반직 6급으로	2022.03.01.
이형재	혁신기획처	일반직 7급에서 일반직 6급으로	2022.03.01.

3. 중등교원 인사

가. 복직

양태일	동해삼육고등학교	교사	2022.03.01.
김성빈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	2022.03.01.
박진영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	2022.03.01.

나. 휴직

권순아	동해삼육중학교	교사	질병휴직연장	2022.03.01.~2022.08.31.
하주연	동해삼육중학교	교사	질병휴직	2022.05.20.~2023.02.28.
강주영	동해삼육중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2.03.01.~2022.08.31.
나은혜	대전삼육중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2.03.01.~2022.05.15.
김예단	영남삼육중학교	교사	육아휴직연장	2022.03.01.~2023.02.28.
전계현	동해삼육고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2.03.01.~2022.08.31.

간서명	백종규	최진	김은
-----	-----	----	----

이민형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2.03.01.~2023.02.28.
손운택	영남삼육고등학교	교사	육아휴직	2022.03.01.~2023.02.28.

다. 퇴직

라인철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명예퇴직)	2022.02.28.
이관영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명예퇴직)	2022.02.28.
장완섭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명예퇴직)	2022.02.28.
박진영	서울삼육고등학교	교사(의원면직)	2022.03.01.
전혜진	동해삼육중학교	교사(의원면직)	2022.03.01.

라. 승진

김인숙	원주삼육중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에서	교장으로	2022.03.01.
우태구	동해삼육중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에서	교장으로	2022.03.01.
오세길	원주삼육중학교	교감직무대리에서	교감으로	2022.03.01.

4. 초등교원 인사

가. 휴직

고유미	부산삼육초등학교	교사	질병휴직	2022.03.01.~2023.02.28.
-----	----------	----	------	-------------------------

나. 퇴직

류상일	부산삼육초등학교	교사(의원면직)	2022.03.01.
-----	----------	----------	-------------

5. 삼육대학교부속유치원 인사

가. 재임용

이미화	원감	2022.03.01.~2023.02.28.
이미정	정교사	2022.03.01.~2023.02.28.
김윤성	정교사	2022.03.01.~2023.02.28.
백아름	정교사	2022.03.01.~2023.02.28.
최은진	정교사	2022.03.01.~2023.02.28.
홍기은	정교사	2022.03.01.~2023.02.28.
이수현	정교사	2022.03.01.~2023.02.28.
홍민지	행정직원	2022.03.01.~2023.02.28.
최건환	관리기사	2022.03.01.~2023.02.28.
김애실	조리사	2022.03.01.~2023.02.28.
권순희	조리사	2022.03.01.~2023.02.28.

나. 퇴직

노혜경	정교사(의원면직)	2022.03.01.
김영현	정교사(방과후과정-의원면직)	2022.03.01.
배영인	정교사(인턴-의원면직)	2022.03.01.
이진	정교사(인턴-의원면직)	2022.03.01.

간서명	백종규	이승민	김영민
-----	-----	-----	-----

조예진	정교사(인턴-의원면직)	2022.03.01.
권신덕	부교사(의원면직)	2022.03.01.
노유경	부교사(의원면직)	2022.03.01.
신소연	부교사(의원면직)	2022.03.01.
유다연	부교사(의원면직)	2022.03.01.
전하원	부교사(의원면직)	2022.03.01.

다. 신규임용

이솔잎	정교사(교육과정)	2022.03.01. ~ 2023.02.28.
배영인	정교사(방과후과정)	2022.03.01. ~ 2023.02.28.
이진	정교사(방과후과정)	2022.03.01. ~ 2023.02.28.
조예진	정교사(방과후과정)	2022.03.01. ~ 2023.02.28.
박윤지	정교사(인턴)	2022.03.01. ~ 2023.02.28.
안효원	부교사	2022.03.01. ~ 2023.02.28.
윤혜연	부교사	2022.03.01. ~ 2023.02.28.
방미현	부교사	2022.03.01. ~ 2023.02.28.
유선화	부교사	2022.03.01. ~ 2023.02.28.
황지현	부교사	2022.03.01. ~ 2023.02.28.
강수빈	부교사	2022.03.01. ~ 2023.02.28.
윤희경	영양사	2022.03.01. ~ 2023.02.28.

간서명	백종규	최승민	박은우
-----	-----	-----	-----

별지2. 2021학년도 추경예산안

1. 광주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5,202,300		5,371,213		-168,913		-3.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전년도이월금	0	156,365	3.0	교육활동 지원	-40,901	264,611	5.1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16,523	3,477	0.1	기본적 교육활동	-9,620	678,443	13.0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7,156	592,465	11.4	선택적 교육활동	-2,364	1,259,971	24.2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33,968	4,423,162	85.0	인적자원 운용	-1,056	1,767,914	34.0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1,266	26,831	0.5	학교 일반운영	-66,796	283,674	5.5
					학교시설 확충	-13,658	0	0.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4,518	947,687	18.2
합계		-168,913	5,202,300		합계	-168,913	5,202,300	

2. 대전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4,904,919	4,944,280			-39,361		-0.8	
세입					세출				
장	관	금 회	누 계	구 성 비	정 책 사 업	금 회	누 계	구 성 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33,063	0.6	인적자원 운용	-15,227	1,703,407	34.7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20,006	656,350	13.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3,965	1,041,741	21.2	
	기타이전수입	0	15,289	0.3	기본적 교육활동	-40,742	546,011	11.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60,199	3,766,368	76.7	선택적 교육활동	-56,120	639,073	13	
	행정활동수입	832	42,938	0.8	교육활동 지원	-16,589	174,154	3.5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90,911	7.9	학교 일반운영	-47,610	213,633	4.3	
					학교시설 확충	123,462	585,400	11.9	
					학교 재무활동	-500	1,500	0	
합계		-39,361	4,904,919			-39,361	4,904,919		

간서명	박종규	최성	김영민
-----	-----	----	-----

3. 서해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4,363,113		5,191,720		-828,607		-16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0	0	0	인적자원 운영	-3,561	1,004,515	2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0	0	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783	437,399	10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848,283	3,261,453	74.8	기본적 교육활동	82	484,129	11.1
	기타이전수입	20,000	32,000	0.7	선택적 교육활동	-2,980	279,577	6.4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456	1,020,259	23.4	교육활동 지원	-1,229	275,823	6.3
	행정활동수입	132	17,445	0.4	학교 일반운영	864	98,878	2.3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1,956	0.7	학교시설 확충	-820,000	1,779,807	40.8
					학교 재무활동	0	2,985	0.1
합계		-828,607	4,363,113	100	합계	-828,607	4,363,113	100

4. 원주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4회		5,339,799	5,317,818		21,981		0.4%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37,633	1,430,184	26.7	인적자원운용	-28,125	1,886,225	35.3
이전수입	이전수입	34,268	179,422	3.3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20,477	648,758	12.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742	3,612,813	67.6	기본적 교육활동	23,599	571,495	10.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50,662	43,880	0.8	선택적 교육활동	-971	500,380	9.3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73,500	1.3	교육활동지원	-6,087	159,464	2.9
					학교일반운영	-44,107	121,237	2.2
					학교시설 확충	99,149	1,449,145	27.1
					학교재무활동	-1,000	3,095	0

간서명	박종규	최승	김태원
-----	-----	----	-----

5. 춘천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3,049,383	3,083,066	-33,683		-1.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가이전수입	0	9,050	0.2	인적자원 운영	-2,619	1,045,656	34.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0	2,000	0.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6,156	696,420	22.8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21,319	714,714	23.4	기본적 교육활동	-17,765	352,021	11.5
	기타이전수입	0	0	0	선택적 교육활동	-134	244,248	8.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0,348	2,229,686	73.1	교육활동 지원	4,395	444,364	14.5
	행정활동수입	-44,654	41,143	1.3	학교 일반운영	6,326	135,848	4.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52,790	1.7	학교시설 확충	-7,730	111,870	3.6
					학교 재무활동	0	18,956	0.6
합계		-33,683	3,049,383	100	합계	-33,683	3,049,383	100

6. 태강삼육초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차	7,442,617		7,394,114		48,503		0.7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62,259	3.5	교육활동 지원	16,000	512,482	6.8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2,960	0.2	기본적 교육활동	-79,728	1,130,605	15.2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48,386	936,236	12.6	선택적 교육활동	0	1,095,011	14.7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127,926	1.7	인적자원 운용	-6,225	2,418,855	32.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48	6,074,599	81.6	학교 일반운영	15,009	610,787	8.2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265	28,637	0.4	학교시설 확충	60,000	126,207	1.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3,447	1,548,670	20.8

간서명	박종규	최승민	김민우
-----	-----	-----	-----

7. 대전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3회		3,626,884	3,306,611		320,273		9.7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0	13,361	0.4	인적자원운용	-14,422	1,519,489	41.9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323,983	3,044,124	83.9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13,508	753,702	20.6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086	374,223	10.3	기본적교육활동	-6,761	221,973	6.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443	181,969	5.0	선택적교육활동	1	56,785	1.6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1,819	9,334	0.3	교육활동지원	74,774	269,584	7.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873	0.1	학교일반운영	-19,349	217,383	6.0
					학교시설 확충	299,538	586,670	16.2
					학교재무활동	0	1,298	0

8. 서해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4회		1,531,744	1,530,593		1,151		0.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931	1,338,149	87.3	인적자원 운용	-1,116	760,624	49.6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15,000	0.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8	222,447	14.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168,498	11.0	기본적 교육활동	2,881	188,157	12.2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220	4,380	0.2	선택적 교육활동	0	41,398	2.7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5,717	0.3	교육활동 지원	-5,570	146,222	9.5
					학교 일반운영	-8,016	84,405	5.5
					학교시설 확충	13,000	87,890	5.7
					학교 재무활동	0	601	0

간서명	백종규	정승민	김영민
-----	-----	-----	-----

9. 동해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6회		1,520,705		1,549,839		-29,134		-1.9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인적자원운용	-2,195	734,676	84.3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8,285	2.5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1,442	142,423	9.3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32,980	1,425,041	93.7	기본적교육활동	-15,930	168,443	11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3,846	7,695	0.5	선택적교육활동	-270	56,826	3.7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45,164	2.9	교육활동지원	-9,943	238,701	15.6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791	0	학교일반운영	300	47,893	3.1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729	0.2	학교시설 확충	346	126,782	8.3	
					학교재무활동	0	4,961	0.3	

10. 영남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액		비율(%)	
추경4회		2,902,080	2,962,312		-60,232		-2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713	125,381	4.2	인적자원 운용	-18,068	1,276,764	43.5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43,573	2,073,925	71.4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8,731	672,141	22.9
	기타이전수입	-573	92,023	3.1	기본적 교육활동	-1,926	119,910	4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534,849	18.2	선택적 교육활동	-175	224,600	7.6
	행정활동수입	627	6,675	0.2	교육활동 지원	10,267	436,889	14.9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69,227	2.3	학교 일반운영	-31,599	121,677	4.1
					학교시설 확충		5,000	0.1
					학교 재무활동		45,099	1.5
합계		-60,232	2,902,080		합계	-60,232	2,902,080	

간서명	백종규	최승	조민
-----	-----	----	----

11. 원주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3회		3,868,166		3,926,103		-57,937		-1.5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가이전수입	-2	0	0.0	인적자원 운영	-52,289	2,183,896	56.5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0	1,000	0.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12,936	261,728	6.8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362,449	3,566,003	92.2	기본적 교육활동	-18,361	485,149	12.5
	기타이전수입	-418,955	4,125	0.1	선택적 교육활동	-3,972	78,248	2.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2,444	185,575	4.8	교육활동 지원	-10,194	427,355	11.1
	행정활동수입	1,015	6,321	0.1	학교 일반운영	-8,536	138,941	3.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05,142	2.7	학교시설 확충	22,479	230,515	6.0
					학교 재무활동	0	62,334	1.5
합계		-57,937	3,868,166	99.9	합계	-57,937	3,868,166	100

12. 한국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4,905,562		4,887,601		17,961		0.4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700	0.2	인적자원 운용	4,013	2,902,215	59.1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35,947	4,511,406	91.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8,010	637,072	12.9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0	48,887	0.9	기본적 교육활동	5,097	156,784	3.1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8,426	307,154	6.2	선택적 교육활동	-10,264	332,189	6.7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440	5,310	0.1	교육활동 지원	9,338	619,010	12.6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전년도	0	20,105	0.4	학교 일반운영	1,767	256,292	5.2
					학교시설 확충		0	0
					학교 재무활동		2,000	0

간서명	백 동 규	최 승	김 영
-----	-------	-----	-----

13. 호남삼육중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4회	3,986,303	3,989,179	-2,876	-0.1
세입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0	2,500	0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3,432	395,167	9.9
이전수입	이전수입	0	16,319	0.4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844	3,167,591	79.4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2,400	17,776	0.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386,950	9.7
			학교일반운영	-5,368
			학교시설 확충	122,140
			학교재무활동	0

14. 동해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6회	4,178,993	4,243,239	-64,246	-1.5
세입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0	25,670	0.6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43,573	1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70,168	3,551,049	84.9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5,922	355,758	8.5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89,097	2.1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2,231	0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11,615	2.6
			학교일반운영	-1,868
			학교시설 확충	-32,935
			학교재무활동	0

간서명	박종규	정승	김민
-----	-----	----	----

15. 서울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5회		9,600,332		9,595,500		4,832	0.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26,487	0.3	교육활동 지원	-5,022	1,195,945	12.5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72	583,666	6.1	기본적 교육활동	-346	143,598	1.5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431	8,378,024	87.3	선택적 교육활동	0	30,884	0.3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318,239	3.3	인적자원운용	-3,396	4,513,460	47.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017	262,082	2.7	학교일반운영	12,715	427,774	4.5
기타수입	행정활동수입	3,456	31,834	0.3	학교재무활동	0	0	0.0
					학교시설 확충	0	2,298,120	23.9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881	990,551	10.3
합계		4,832	9,600,332	100	합계	4,832	9,600,332	100

16. 서해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4회		7,152,271		7,155,413		-3,142		0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0	160,799	2.2	인적자원 운용	-1,098	2,134,417	29.8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13,583	6,195,372	86.6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2,561	1,255,292	17.5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18,264	407,051	5.6	기본적 교육활동	-838	62,608	0.8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939	360,080	5.0	선택적 교육활동	-10	38,684	0.5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600	14,950	0.2	교육활동 지원	-6,757	589,599	8.2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14,019	0.1	학교 일반운영	-9,934	184,562	2.5	
					학교시설 확충	12,934	2,886,188	40.3	
					학교 재무활동	0	921	0	

간서명	박종규	최승민	김민우
-----	-----	-----	-----

17. 영남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예산액		비율(%)	
추경4회		4,864,587	4,802,863		61,724		1.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423	66,521	1.3	인적자원 운용	-4,170	1,208,829	24.8
	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29,234	3,714,692	76.3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32,350	1,371,399	28.1
	기타이전수입	36,123	485,695	9.9	기본적 교육활동	-1,388	112,786	2.3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1	490,254	10.0	선택적 교육활동	0	139,796	2.8
	행정활동수입	-209	22,347	0.4	교육활동 지원	24,108	262,283	5.3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85,078	1.7	학교 일반운영	2,145	346,704	7.1
					학교시설 확충	39,010	1,386,451	28.5
					학교 재무활동	34,369	36,339	0.7
합계		61,724	4,864,587		합계	61,724	4,864,587	

18. 원주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률(%)	
추경4회		5,493,584		5,680,882		-187,298		-3.3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 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이전수입	-180,460	4,947,539	90.0	인적자원 운영	37,019	2,454,279	44.7	
	기타이전수입	-6,413	189,754	3.5	학생복지/교육격차 해 소	-2,069	876,535	16.0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0	170,565	3.1	기본적 교육활동	-119,308	654,081	11.9	
	행정활동수입	-425	98,815	1.8	선택적 교육활동	-3,746	76,042	1.4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86,911	1.6	교육활동 지원	14,274	407,935	7.4	
					학교 일반운영	1,328	254,808	4.6	
					학교시설 확충	-114,796	731,760	13.3	
					학교 재무활동	0	38,144	0.7	
합계		-187,298	5,493,584	100	합계	-187,298	5,493,584	100	

간서명	박종규	조지	조지
-----	-----	----	----

19. 한국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3회	7,049,293	6,709,759	339,534	5.1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 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0	229,167	3.2	인적자원운용	-32,384	3,637,025	51.5
이전 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395,695	6,096,942	86.4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31,437	1,283,423	18.2
이전 수입	이전수입	27,452	374,972	5.3	기본적교육활동	7,239	108,699	1.5
자체 수입	학부모부담수입	- 4,982	287,833	4	선택적교육활동	1,330	45,023	0.6
자체 수입	행정활동수입	-6	36,471	0.5	교육활동지원	99,850	838,923	11.9
기타 수입	전년도이월금	-78,625	23,908	0.3	학교일반운영	-3,562	386,898	5.4
					학교시설 확충	230,624	737,302	10.4
					학교재무활동	5,000	12,000	0.1

20. 호남삼육고등학교

(단위 : 천원)

예산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증감율(%)		
추경4회		4,009,766	3,986,232	23,534		0.6		
세입				세출				
장	관	금회	누계	구성비	정책사업	금회	누계	구성비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0	3,500	0	인적자원운용	4,349	2,200,343	54.8
이전수입	지방교육자치단체	23,492	3,468,567	86.5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20,456	1,023,359	25.5
이전수입	이전수입	-867	292,074	7.2	기본적교육활동	-939	66,347	1.6
자체수입	학부모부담수입	909	230,524	5.7	선택적교육활동	-300	34,590	0.8
자체수입	행정활동수입	0	7,553	0.1	교육활동지원	-2,774	126,565	3.1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0	7,548	0.1	학교일반운영	2,742	233,957	5.8
					학교시설 확충	0	324,605	8.0
					학교재무활동	0	0	0

간서명	박종규	이승민	김민준
-----	-----	-----	-----

별지3. 정관변경안

현행	개정	비고
제 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⑦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자	제 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⑦ <현행과 같음>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u>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u> 2. 사립학교 <u>교원으로 재직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u>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u>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u>	사립학교법 제21조 개정
제 43조 (임용) ①~⑩ <생략> ⑪ <신설>	제 43조 (임용) ①~⑩ <현행과 같음> ⑪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u>	사립학교법 제53조2의 개정
<신설> 제 50조의6(청렴의무) 제 50조의7(사학기관 행동강령)	<신설>제 50조의6(청렴의무) <u>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 50조의7(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50조의6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이하 “사학기관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사립학교법 제72조의4,5 신설

간서명	박종규	이승민	김영민
-----	-----	-----	-----

현행	개정	비고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9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제 59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 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라. <u>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u> (<u>「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u>) 마. <u>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사립학교법 제62조 개정

간서명	박종규	최승리	김민우
-----	-----	-----	-----

현행	개정	비고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신설>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설>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 65조 (징계의결) ①~③<생략>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5조 (징계의결) ①~③<현행과 같음> 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⑤징계 처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66조 개정
제 90조 (총장 등) ①~④<생략> ⑤<신설>	제 90조 (총장 등) ①~④<현행과 같음> <신설>⑤ 대학교에 총장특보를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제 92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재무실을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교육혁신단, 스미스학부대학, 부총장 직속기구로 입학관리본부, 인성교육원, 학술정보원, 사회봉사단,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을 둔다.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산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실장은 3급으로 보한다.	제 92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u>입학처</u>, 사무처, 대외협력처, 연구산학처, <u>재무처(실)</u>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u>산학협력단</u>, <u>교육혁신원</u>, <u>대학일자리본부</u>, <u>글로벌사회혁신원</u>, <u>SU인권센터</u>, <u>S/W융합교육원</u>, 부총장 직속기구로 학술정보원, <u>학교기업</u>, 재정지원사업단, 캠퍼스사업단, <u>예비군대대</u>를 둔다. ②각 처장과 각 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이상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u>재무처(실)장</u>은 3급으로 보한다.	

간서명	박종규	최승호	김민준
-----	-----	-----	-----

현행	개정	
③<생략> ④센터장 및 부장 및 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본부장 및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⑤<생략>	③<현행과 같음>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 94조 (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①<생략> ②대학부속기관에는 대학교회, 박물관, 생활건강증진원, 재림교회/E.G.화잇연구센터, 대학언론사, 인성교육수련원, 그린교육장, 실험동물연구센터, 에코팜센터, 임송실습교육장, 공통기기실험실을 둔다. ③부속교육기관에는 국제교육원, 평생교육원, 글로벌영재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교육원을 둔다. ④부설연구기관에는 융합연구센터, 부설연구소, 자율연구소, 북아태지회연구소, 정책연구소를 둔다. ⑤, ⑥<생략>	제 94조 (대학부속기관및부속교육기관및부설연구기관) ①<현행과 같음> ②각 기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각 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한다. ④각 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⑤, ⑥<현행과 같음>	
제 95조 (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①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에 팀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②<생략>	제 95조 (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 ①학술정보원에 <u>학술정보팀과 정보전산팀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각 팀의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u> ②<현행과 같음>	
제 95조2 (산학협력단) ①<생략> ②산학협력단장은 2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③<생략>	제 95조2 (산학협력단) ①<현행과 같음> ②산학협력단장은 <u>3급</u>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제 97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행정지원실, 교목실, 재무실을 둔다.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6급(주사)으로 보한다. ③교목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제 97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혁신기획처, 교무입학처, 학생성공처, <u>행정지원처(실)</u>, <u>교목처(실)</u>, <u>재무처(실)</u>를 둔다. ②혁신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학생성공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행정지원실장은 <u>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③<u>교목처(실)</u>에 <u>처(실)장</u>을 두며 <u>처(실)장</u>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간서명	박종규	이승민	조근우
-----	-----	-----	-----

현행	개정	비고
④재무실에 실장을 두며, 실장은 3급(부참여) 또는 4급(참사)으로 보한다.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부, 과,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둔다. ⑥<생략>	④재무처(실)에 처(실)장을 두며, 처(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⑤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본부,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를 따라 두며, 부처장, 본부장,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현행과 같음>	
제 99조2 (산학협력단) ①<생략> ②산학협력단장은 3급(부참여)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및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③<생략>	제 99조2 (산학협력단) ① (현행과 같음) ②산학협력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보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제116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6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삼육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u>심의를 하기</u>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초·중등교육법제31조1항 개정
별표 1 학교정원 일반직 5급16명 6급76명 7급33명 8급24명 9급92명 기술직 6급29명 7급9명 8급2명 기능직 6급6명 7급23명 8급21명 9급14명	별표 1 학교정원 <u>일반직 5급17명 6급81명 7급30명 8급21명 9급89명</u> <u>기술직 6급31명 7급8명 8급1명</u> <u>기능직 6급5명 7급21명 8급18명 9급13명</u>	
별표 2 한국삼육고등학교 일반직 6급1명 7급1명 9급5명 삼육보건대학교 일반직 6급10명 7급7명 8급4명 9급1명 기술직 6급2명 7급2명 8급 1명 기능직 6급1명 7급2명 8급3명 9급1명	별표 2 한국삼육고등학교 일반직 <u>5급1명</u> 6급1명 7급1명 <u>8급1명 9급3명</u> 삼육보건대학교 <u>일반직 6급15명 7급4명</u> <u>기술직 6급4명 7급1명</u> <u>기능직</u>	

간서명	박종규	최승민	가르민
-----	-----	-----	-----

별지4. 삼육보건대학교 보수규정안

2022년도 삼육보건대학교 보수 기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삼육학원 정관 제49조 및 제86조에 따라 삼육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 재직하는 교원·직원(이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과 대학 인사규정 및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은 대학 규정 및 연봉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

③ 겸임교원, 강사,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은 대학 규정 및 계약서에 따른 보수를 적용한다.

④ 2015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

⑤ 2019년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월액과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급별, 호봉별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연봉제 교직원은 해당 규정에 따른 봉급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란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계산) ① 교직원의 보수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교직원이 휴직인 경우에는 법인 정관 및 대학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③ 결근한 교직원의 경우에는 그 결근 일수가 해당 교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보수일액을 빼고 지급한다.

⑤ 면직, 징계,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법인 정관, 대학규정 및 결의(이사회 또는 징계위원회 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⑥ 대학 규정에 따라 연구년 또는 산업체 직무연수 등을 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교직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② 보수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를 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간서명	백종규	이승민	박재민
-----	-----	-----	-----

4. 본인이 선택한 기간의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제2장 봉급

제7조(호봉확정 및 승급) ①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급호봉 및 승급 등은 대학 규정에 의한다.
②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직원의 호봉은 승급월로 승급한다.

제8조(교직원의 봉급) 교직원의 봉급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① 교직원에 대한 봉급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2.3.1.>
- ② 총장 및 교원의 봉급월액은 [별표2]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며, 교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으며,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③ 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3]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수당

제9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에서 수주한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침 및 대학 규정에 따라 강의료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①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월 1일에 재직 중이고 봉급이 지급되면서 직전 6개월간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 하되, 휴직/징계(감봉이상) 중인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할하여 지급한다(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근속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1.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별표5]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게는 [별표6]의 지급구분에 따른 가족수당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아래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

- 1.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해당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단,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및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2.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3. 가족 중 한명이 [별표6]의 1)에 표기된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직계존속과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나이에 제한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 5.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매해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2021.3.1.>

간서명	박종규	최승민	조영민
-----	-----	-----	-----

제12조(상여금 등) ① 근무성적, 업무실적, 업적평가 등이 우수한 교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

② 대학 부속기관은 별도의 대학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성과상여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의 부속기관은 평생교육원, 사이버지식교육원, 국제언어교육원, 산학협력단 등으로 한다.

③ 장기근속자에게는 [별표7]에 따른 장기근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퇴직자에게는 [별표8]에 따른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공로가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의 제안으로 총장이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

⑥ 정기상여금을 아래와 같이 연2회 지급할 수 있다.

1.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날로 한다.

2. 위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되 휴직 또는 징계중이거나 평가기준 미달인 교직원과 입사 후 6개월 미만 교직원은 제외한다(단, 재단의 인사이동으로 이동한 직원은 직전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3. 정기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월봉급액의 40% ~ 60%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일로부터 전후 15일 이내에 총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수당) ① 교직원에게 [별표9]에 따른 직책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

② 해당 교직원에게는 [별표10]에 따른 기타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

③ 대학 규정에 따른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1급 이하의 직원에게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가보상비(5일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단, 일부 직원에게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입학전형에 참여하는 교직원 등에게 대학의 입시수당 규정에 따른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

⑥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

제14조(기타) ① 규정에 따라 사택에 거주하는 교직원이나 전세금 보조를 받는 교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월봉급액의 3.5%를 사택비로 징수한다

② 이사비는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박종규	최승민	김민우
-----	-----	-----	-----

[별표1] <삭제 2022.3.1.>

[별표2] 교원의 봉급표 <개정 2022.3.1.>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109,400	18	3,767,100	근1	5,977,100
2	2,175,800	19	3,895,700	근2	6,050,600
3	2,242,700	20	4,022,900	근3	6,124,000
4	2,309,000	21	4,150,400	근4	6,197,400
5	2,375,900	22	4,278,100	근5	6,270,800
6	2,449,100	23	4,444,400	근6	6,344,300
7	2,522,100	24	4,610,300	근7	6,417,700
8	2,595,500	25	4,776,200	근8	6,491,100
9	2,705,600	26	4,941,900	근9	6,564,500
10	2,815,700	27	5,107,600	근10	6,638,000
11	2,926,000	28	5,273,300	특3	7,081,300
12	3,035,700	29	5,399,300		
13	3,145,100	30	5,525,600		
14	3,254,700	31	5,651,600		
15	3,383,200	32	5,777,600		
16	3,511,600	33	5,903,700		
17	3,639,400				

* 교원의 연봉표

(단위 : 원)

구분	하한액	상한액	비고
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수 50,000,000	연봉책정위원회에서 별도 정함 60,000,000	정기상여금 기본연봉의 7% 기준으로 연2회(설날, 추석날) 균등분할지급
	부교수 45,000,000		
	조교수 35,000,000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3,000,000	40,000,000	강의전담, 산학협력중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3,000,000	50,000,000	교육전담

* 연봉인상률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고
교원업적평가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70점미만	
인상률	공무원인상율의 1.5배	공무원인상률 1.2배	공무원인상률의 1.0배	동결	

간서명	백종규	최승리	가은
-----	-----	-----	----

[별표3] 직원의 봉급표 <개정 2022.3.1.>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122,200	3,711,000	3,348,000	2,869,500	2,564,200	2,115,400	1,898,300	1,692,500	1,659,200
2	4,266,700	3,848,700	3,471,900	2,986,700	2,668,000	2,213,800	1,984,900	1,774,700	1,682,000
3	4,414,900	3,988,100	3,599,500	3,105,800	2,775,500	2,315,400	2,076,600	1,861,500	1,720,100
4	4,566,400	4,129,000	3,728,000	3,227,600	2,887,300	2,419,100	2,173,000	1,950,000	1,773,300
5	4,721,500	4,271,700	3,858,600	3,351,200	3,002,000	2,526,000	2,272,800	2,042,000	1,841,800
6	4,878,600	4,414,800	3,990,500	3,475,900	3,119,000	2,635,700	2,375,000	2,136,200	1,927,800
7	5,037,900	4,559,600	4,123,800	3,601,800	3,237,900	2,745,800	2,477,900	2,230,800	2,013,400
8	5,198,700	4,704,300	4,257,600	3,728,300	3,358,300	2,856,200	2,581,400	2,321,600	2,096,000
9	5,361,700	4,850,000	4,392,500	3,855,200	3,479,000	2,967,000	2,679,900	2,408,400	2,175,000
10	5,525,600	4,995,500	4,527,400	3,981,900	3,600,600	3,070,900	2,773,900	2,490,300	2,251,000
11	5,689,300	5,141,900	4,662,300	4,109,800	3,714,100	3,169,400	2,862,600	2,569,800	2,323,600
12	5,858,400	5,293,100	4,802,300	4,230,100	3,823,700	3,266,500	2,949,800	2,647,500	2,395,700
13	6,028,400	5,445,300	4,932,400	4,342,700	3,927,700	3,357,800	3,032,500	2,722,000	2,464,800
14	6,198,900	5,582,900	5,053,200	4,447,800	4,024,700	3,444,100	3,111,600	2,793,200	2,531,900
15	6,347,900	5,710,100	5,164,400	4,546,700	4,116,300	3,526,900	3,187,000	2,861,700	2,596,000
16	6,480,200	5,826,400	5,268,200	4,639,900	4,202,500	3,604,400	3,258,500	2,927,700	2,658,100
17	6,597,600	5,933,600	5,364,700	4,726,600	4,283,600	3,678,500	3,327,100	2,989,400	2,718,700
18	6,702,100	6,031,500	5,454,300	4,807,400	4,360,100	3,748,500	3,392,700	3,049,300	2,775,000
19	6,795,600	6,122,100	5,537,200	4,883,100	4,432,200	3,814,900	3,454,500	3,106,700	2,830,600
20	6,879,600	6,204,600	5,614,800	4,953,700	4,499,800	3,877,400	3,513,300	3,161,600	2,883,600
21	6,956,800	6,280,000	5,686,700	5,019,800	4,563,400	3,937,500	3,569,500	3,213,900	2,933,600
22	7,025,600	6,349,300	5,753,300	5,081,700	4,623,100	3,994,100	3,622,500	3,264,100	2,981,500
23	7,083,800	6,412,600	5,814,700	5,139,700	4,679,600	4,047,200	3,673,700	3,311,800	3,027,100
24		6,464,500	5,872,100	5,194,500	4,732,200	4,097,700	3,722,400	3,358,000	3,071,000
25		6,513,900	5,919,300	5,244,600	4,782,100	4,145,900	3,768,500	3,401,700	3,112,900
26			5,964,200	5,287,000	4,829,100	4,191,200	3,812,700	3,444,300	3,150,700
27			6,005,900	5,326,200	4,867,900	4,234,400	3,850,100	3,479,600	3,183,300
28				5,363,600	4,905,300	4,270,500	3,884,800	3,513,600	3,214,700
29					4,939,700	4,304,500	3,918,500	3,545,900	3,244,900
30					4,973,100	4,337,900	3,950,700	3,577,100	3,274,300
31						4,368,900	3,980,900	3,607,400	3,303,200
32						4,398,200			

* 직원의 연봉표

(단위 : 원)

구 분	최초 금액	상한 금액	비고
연 봉	28,000,000	56,000,000	기본 연봉
	2,000,000	4,000,000	정기상여금
합 계	30,000,000	60,000,000	

* 연봉인상률

직원평가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인상률 (공무원인상률)	1.2배	동일	0.5배	동결

간서명	백종규	최승민	정승민
-----	-----	-----	-----

[별표4] 정근수당 지급구분

(지급률 : 월봉급액 기준 %)

근무연수	지급률	근무연수	지급률	근무연수	지급률	근무연수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3년 이상	15%	6년 이상	30%	9년 이상	45%
1년 이상	5%	4년 이상	20%	7년 이상	35%	10년 이상	50%
2년 이상	10%	5년 이상	25%	8년 이상	40%		

[별표5] 장기근속수당 지급구분

(월지급액, 단위 : 원)

근무연수	금액	근무연수	금액
5년 미만	20,000	15년 이상 - 20년 미만	80,000
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	20년 이상 - 25년 미만	110,000
10년 이상 - 15년 미만	60,000	25년 이상	130,000

[별표6] 가족수당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지급금액(인당)	비고
배우자	40,000	
직계존속	20,000	남 : 60세 이상 / 여 : 55세 이상
자녀	첫째 : 20,000 / 둘째 : 60,000 / 셋째이후 : 100,000	20세 미만

1) 가족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기관

- 교단 내 모든 기관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 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립학교 등

[별표7] 장기근속포상금

(단위 : 원)

근속연수	10년 이상 근속자	20년 이상 근속자	30년 이상 근속자
지급금액	200,000	300,000	500,000

[별표8] 전별금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임원(총장, 처장, 실장)	600,000	1. 정년은퇴(명예퇴직)의 경우에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상기의 금액 범위 안에서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교수, 과장급 이상	500,000	
기타	400,000	

[별표9] 직책수당 <개정 2021.3.1.>

(월지급액, 단위 : 원)

연번	금액	지급대상
1	250,000	총장
2	200,000	처장, 교목처(실)장, 재무처(실)장,
3	170,000	부처장겸 본부장, 평생교육원장, 산학협력단장, 행정지원처(실)장, 전인교육원장
4	140,000	행정부장, 도서관장, 본부장, 학부장, 부원장, 부처장
5	120,000	학과장
6	100,000	행정과장, 전공주임(전공심화는 50%), 센터장
7	80,000	팀장

간서명	백종규	박승민	김민우
-----	-----	-----	-----

[별표10] 기타수당 <개정 2022.3.1., 2021.3.1.>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지급기준 등)
직급보조비	6급 170,000	8급 160,000	대상 :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7급 165,000	9급 150,000	
학사지도비	30,000		대상 : 교원, 일반직, 기술직
정액급식비	140,000		대상 : 교원,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교원연구보조비	교 수 690,000	조교수 560,000	대상 : 교원
	부교수 620,000		
관리업무수당	총장	100,000	
	처, 실장, 평생교육원장	50,000	
활동수당	학부장 및 학과장 50,000		
직원교육지원비	2급 690,000	6급 360,000	대상 : 일반직, 기술직
	3급 620,000	7급 320,000	
	4급 560,000	8급 290,000	
	5급 430,000	9급 250,000	
	6급 270,000	8급 220,000	대상 : 기능직
	7급 240,000	9급 190,000	

간서명	백종규	김승진	김현우
-----	-----	-----	-----

별지5. 삼육대학교 SU-Glory 2030중장기 발전계획안

가치 · 이 념 체 계	슬로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교육이념	지성과 영성과 신체의 균형잡힌 전인교육을 통한 인류사회 기여				
	교육목적	미션(Mission) · 비전(Vision) · 열정(Passion)을 갖춘 전인적 인재 양성				
	인재상	삼육 MVP(진리와 사랑의 글로벌 봉사자)				
	교육목표	정직한 교양인	창의적 지식인	실천적 봉사인		
	핵심역량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글로벌
	하위역량	- 준법성 - 참여의식 - 양심	- 의사소통 - 대인관계 - 사회성	- 전문성 - 통합적사고 - 개방성	- 문제해결능력 - 목표설정·실천 - 자기효능감	- 글로벌능력 - 글로벌적응 - 다문화이해

발전계획 체계				
비전	사람중심의 창의융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			
(6대) 발전목표	M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역량 강화	V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P 대학경영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1 대학의 지능화 혁신을 위한 교육연구 역량 혁신 4차산업 분야 우수 교원 확충 - 학제간 융합 교육 · 연구 2 공유 생태계 조성 및 가치를 창출하는 산학협력 - 산학협력 여건 지표 향상 2030년까지 산학연 융합연구 클러스터 구축	3 MVP 교육의 융합화 · 유연화 · 초연결화 혁신 4차산업 기반 교양교육 혁신 - 전공교육 체계 고도화 - 학사제도 유연화 구현 4 OECD Education 2030 기반 교육 질 관리 선도대학 구현 - 핵심역량 기반 교육체계 강화 ‘고교과 교육’ 관리체계 구축 - MVP혁신 교수법의 고도화	5 성과관리 · 시스템 기반 행정·재정 관리 혁신 - 등록금 외 재정수입 확충 - ICT, 데이터 기반 행정관리 6 예비신입생, 대국민 대상 대학 브랜드 인지도 제고 - 대학의 사회공헌 역할 강화 - 대학 혁신성과의 대내외 공유 - 대학 평판도 향상	
4대 전략방향	I 고등교육 선도	II 학생 미래비전	III 사회 가치창출	IV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MVP 교육혁신	학생주도 미래설계 및 MVP 인재 구현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공유·협력 사회기여, 융합·초연결 산학협력, 현장기반 실용연구 혁신	구성원의 참여 ·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혁신 거버넌스 구현
12대 전략과제	1. 융합·유연화 기반 미래형 교육 운영체계 혁신 2.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 혁신 3. 교육관리체계 혁신	4. 역량기반 교육 통합관리 체계 구축 5. 학생 성장, 성공을 위한 학업생활 종합지원 6. 사회 기여 MVP 인재를 완성하는 진로 · 취창업 지원	7. 사회문제해결과 미래혁신을 위한 실용연구 역량 강화 8. 소통형 네트워크 추진역량 강화 9.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유·협력	10. 국내외 입학자원 확보 및 학생 유지 관리 11. 재정 건전성 확보 12. 행정관리 역량 강화
특성화 전략	사람중심 창의융합 혁신		고등교육 선도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간서명	박종규	최승민	김민우
-----	-----	-----	-----